「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2026년 10월 6일
2. **제 출 자:** 구 미 시 장
3. **회부일자:** 2026년 10월 7일
4. **상정일자:** 2026년 10월 15일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Ⅱ.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설명자: 도시건설국장 강 신 해
2. 제안이유

가. 본 사업은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대한 전문적인 기획·설계 역량과 다양한 경관시설물의 제작·설치 경험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완성도와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함.

나. 이에 공공디자인 전문기관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디자인 기획부터 실시설계, 제작·설치 및 현장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구미시 도시경관의 정체성과 품격을 향상시키고자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가)「지방자치법」제117조

나)「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4조, 제6조

다)「구미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제6조, 제12조

2) 필요성 :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구미 산단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디자인 혁신기관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확보하여 구미 산단의 디자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다. 위탁 사무 내용 :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

1) 사업 기획, 총괄 관리 및 디자인·전문가 운영 등 수행

2) 기본계획 디자인 수립, 실시설계, 제작·설치 등 분야별 사업 추진

3) 사업 공고, 참여기관 모집 및 선정평가 관리

4) 사업 수행 점검, 컨설팅 및 성과 관리

5) 사업비 집행 관리, 정산 및 결과보고

※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27년 1월 ~ 2027년 12월
- 사업위치 : 구미시 일원(약 4개소)
- 총사업비 : 4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노후파손된 공공 공간, 광장, 산책로 등 경관 개선
 · 주요 경관 요소를 통한 도시디자인 및 공공 환경 개선

라. 위탁시설(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 해당없음

마. 위탁기간 : 2027. 1. ~ 2027. 12.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400백만원(시비)

(단위 : 백만원)

계	인건비	직접비	비고
400	60	340	

사.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미래도시전략과-5902(2026. 9. 29.)]

아. 위탁구분 : 신규 (수탁기관 : (재)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 부서의견

○ 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디자인 및 제작·설치 분야에 전문성과 검증된 사업관리 경험을 갖춘 디자인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 제117조

2)「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3)「구미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제6조, 제12조

나. 예산조치 : 2027년도 예산편성

다.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미래도시전략과-5902(2026. 9. 29.)]

Ⅲ.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임 호 규

○ 본 동의안은

- 노후화된 공공 공간 및 산책로 등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본 안건은 디자인 혁신기관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확보하여 관내 디자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획부터 실시설계, 제작·설치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임.
- 관련 부서에서는 기존에 시에서 직접 수행하던 사업을 위탁으로 전환함에 따라 추가 사업비(인건비 등)가 발생하는 만큼, 관내 주요 대상지(4개소) 선정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또한, 위탁 시행이 실질적인 도시경관 개선 효과에 도움이 될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Ⅴ. 토 론 요 지: 생 략

Ⅵ. 소수의견의 요지:

- 빛공해로 인한 주민 불편 최소화하고, 도심지 뿐만 아니라 외곽 지역까지 균형 있는 도시경관 개선 방안도 고려하여야 함.

Ⅶ. 심 사 결 과: 원안가결